

광주지방법원 2024. 4. 23 선고 2023가단1146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9.

판 결 선 고 2024. 4. 23.

주 문

- 피고는 C(D생), E(F생), G(H생), I(J생)에게 별지 '부동산 표시'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6. 10. 19. 접수 제3065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-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하종민

별지